

기금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30조에 의거 수입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기금이라 함은 적립금, 기금 등 사업운영비 외 기타수입에 해당하는 모든 재정수입을 말한다.
2. 적립금은 사업수입 결산 액 중 일정 목적을 위하여 적립한 기금을 말한다.
3. 목적기금 등의 기부금이라 함은 특별상 관련 기부금, 학술연구 및 조사연구 등 학회발전을 위하여 출연한 기금을 말한다.
4. 기금은 제2호 및 제3호에 의해 조성된 적립금, 목적기금 등의 기부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내규에 의하거나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회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학회에서 적립금, 목적기금 등의 기부금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기금 사용의 원칙) 기금은 목적, 출연용도 및 출연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2장 기금의 관리

제5조(보고 및 운영)

- ① 기금을 출연 받은 학회 사무국은 기금을 출연 받은 후 10일 이내에 출연자, 출연목적, 출연금액, 사용용도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전액 학회에서 위탁 관리한다.

제6조(회계처리) 모든 기금은 학회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영수증 발급) 기부자의 요청 시 학회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 ① 회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한다.
- ② 기금 기부자 및 기금 조성자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기부자 예우와 관련한 대내외적인 정책의 변화가 발생할 시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기금 관리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모금계획 수립, 효율적인 기금 운영, 집행 및 심의 등을 위하여 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0조(구성)

- ① 기금 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예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기능) 기금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적립금 사용 계획 수립
- ② 목적기금 등의 기부금 모금 계획 수립
- ③ 기금 운영 관리 및 심의
- ④ 기타 각 호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

제12조(회의)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14조(조성)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제15조(재원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금
2.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기타 기금과 관련된 수익

제16조(기금의 운영)

- ① 기금조성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기금의 입출 관계를 관리하는 기금관리자는 회장으로 한다.
- ② 회장은 적립금 및 목적기금 등의 기부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 시에는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결과의 보고) 회장은 기금의 운영결과를 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회장은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실시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